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2. 10. 15.
		최종개정일자	2017. 5. 1.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대학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
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률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 ①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
2.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 없는 정보

제5조(정보공개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자의 면전
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
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
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학사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무위원 7인(행정지원처장, 학사지원처장, 기획처장, 입학학생처장, 산학취업처장, 정보관리소장, 도서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서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③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부서의 장이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제12조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의 업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7.5.1〉

제8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

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1조의 2(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5.1>

제12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대학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학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대학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